

# 현 장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1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 공사위치 : 성북구 관내 일원
3. 목 적 :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 4.공사개요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포장 및 보수	T=5Cm~15Cm	a	30	
도로시설물 세척	방음판, 타일 등	m <sup>2</sup>	840	
과속방지턱 설치	B=3.6m	개소	80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		식	1	

## 5.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때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우리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

## 6.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등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6. 12. 31일 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한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가.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 다. 기타 우리구(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 8.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2016.												2017.	
			3	4	5	6	7	8	9	10	11	12	1	2		
토	공	1식	-----													
배 수	공	1식	-----													
구 조 물	공	1식	-----													
포 장	공	1식	-----													
부 대	공	1식	-----													

### 9. 사토처리

- 가. 사토는 실제 반출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기성·준공시 사토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사토처리를 발주청의 승인 없이 불법 매립 및 부당하게 처리할 때는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 다. 사토장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선정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44.2km로 적용하고 운반거리가 44.2km이내일 경우에는 실거리 변경 정산한다.

### 10. 재료관리

- 가. 공사용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되 KS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모든 자재는 필요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지정된 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 다. 사용자재는 제조자로부터 KS 인증서, 품질시험성과표 등을 사전에 제출 받아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라. 자재(관급, 사급) 수불부를 작성 기록하고 준공시 제출한다.

## 11. 공사현장 관리

- 가. 공사 시공 도중 수급인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공중에 해를 미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 나. 공사현장에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 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12. 안전조치

-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 공기연장

-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 나.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강설 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4. 공사시행 및 작업완료 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작업 대상지에 대한 상세 시공 계획 및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 상황을 실측 한 도면과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작업완료보고서를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5. 수급인의 의무

-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시공시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부합되도록 수급인이 부담하여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법령에 의해 배치한 현장대리인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시켜서는 아니 된다.

## 16. 기타사항

- 가. 단가 계약된 물량은 추정 물량하므로 증·감 될 수 있다.
- 나.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포장기능공 전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1단계 시행시기에 입찰 공고되는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계획서를 착공시 제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 현장근로자 실명제 시행

당 공사현장 근로자에게는 소속 회사명과 이름이 새겨진 안전조끼 및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구민고객 중심의 공사실행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일자리 창출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중 성북구민 중에서 고용을 희망하는자 2인 이상을 의무 고용 하여야 한다